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 2023.6.27 규정 제2132호 <시행일:2023.6.2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6. 21.>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6. 21.>

제2장 시장의 운영

제3조(매매거래시간의 변경) 규정 제6조제2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전산장애가 발생하여 10분 이상 호가의 접수 또는 매매거래의 체결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장 회원

제4조(회원가입의 신청) ①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회원가입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규정 제11조의2제2호에 따른 외부사업 감축량 전문회원이 제1항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신청회원의 대표자, 주요주주 등 거래소가 요구하는 기초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28., 2021. 10. 26.>

제5조(회원가입요건) ①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라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및 결제 등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1인 이상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2021. 10. 26.>

② 규정 제14조제2항제1호의 전산설비 등의 시설과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26.>

1.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를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을 것

2.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있을 것

③ 규정 제14조제2항제2호의 인력 확보와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업무의 내용, 범위, 규모 등을 고려하여 매매거래집행 및 결제처리 등의 업무에 적절한 인력을 확보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26.>

④ 규정 제14조제2항제3호의 내부통제체계와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법규준수 및 감사 등과 관련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적절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21. 10. 26.>

⑤ 규정 제14조제2항제4호의 사회적 신용과 관련하여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최근 1년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신설 2021. 10. 26.>

제5조의2(가입비의 면제) ① 규정 제15조제3항제2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회원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② 규정 제15조제3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5. 18., 2021. 10. 26.>

1. 할당대상업체 지정 해제 사유 등으로 제12조제1항제1호의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할당대상업체로 재지정되어 첫 번째 이행연도 개시 전에 다시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2. 일반회원이 거래중개회원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3차 계획기간의 첫 번째 이행연도 종료일까지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

[본조신설 2015. 12. 18.]

제6조(회원탈퇴의 신청) 규정 제17조제1항에 따라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회원탈퇴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회원지위의 승계) 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회원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원지위 승계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8.]

제6조의3(연회비의 납부기간 및 면제) ① 규정 제20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이행연도가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6. 5.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연회비의 원활한 납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의 납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규정 제20조제4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회원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따라 신설된 법인이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④ 규정 제20조제4항제3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 3. 14.>

1. 연회비를 미납한 회원이 파산신청, 회생절차 개시신청 또는 거래은행·채권금융기관의 경영관리 등의 사유로 회원탈퇴를 하는 경우
2. 회원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회원이 제출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본조신설 2015. 12. 18.]

제7조(이의신청) 회원이 규정 제30조제6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
2. 회원조치의 요지
3. 회원조치 사유의 해당 사실관계
4. 이의신청 사유
5. 그 밖에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장 매매거래의 체결

제1절 호가의 입력 및 효력

제8조(호가가격단위) 규정 제34조에 따른 호가가격단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호가의 가격이 1,000원 미만인 경우 : 1원
2. 1 호가의 가격이 1,000원 이상 5,000원 미만인 경우 : 5원
3. 1 호가의 가격이 5,000원 이상 10,000원 미만인 경우 : 10원
4. 1 호가의 가격이 1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인 경우 : 50원
5. 1 호가의 가격이 50,000원 이상 100,000원 미만인 경우 : 100원
6. 1 호가의 가격이 100,000원 이상인 경우 : 500원

제9조(호가접수시간) ① 규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호가접수시간은 시장의 매매거래시간 개시(이하 "장개시"라 한다) 60분 전부터 매매거래시간 종료(이하 "장종료"라 한다) 전까지로 한다.

- ②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정 제6조제2항에 따라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하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접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호가의 입력내용) ① 규정 제37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16. 5. 13.>

1. 회원번호
 2. 계좌번호
 3. 삭제 <2016. 5. 13.>
 4. 종목코드
 5. 수량
 6. 가격. 다만, 이미 제출한 호가를 취소하는 호가의 경우는 제외한다.
 7.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8. 호가의 번호
 9. 취소·정정호가의 경우 그 구분 및 취소·정정하고자 하는 호가의 번호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건을 부여한 경우 그 조건
 - 가. 일부충족조건 :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 중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
 - 나. 전량충족조건 : 해당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량의 전부에 대하여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수량의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
 11. 아이피(IP) 주소 및 맥(MAC) 주소
 12.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제1호의 회원번호는 회원 간 합병 등의 사유로 거래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수로 부여할 수 있다.
- ③ 거래소는 제1항 외에 호가의 입력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호가의 입력제한) 규정 제37조제3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호가를 입력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8, 2016. 5. 13.>

1. 제18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이하 "단일가호가시간"이라 한다)의 경우 제10조제1항제10호의 조건이 부여된 호가
2. 삭제 <2016. 5. 13.>
3. 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호가입력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호가

제12조(호가의 효력) ① 규정 제38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호가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1. 규정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 해당 중단기간 중 입력된 호가(취소호가를 제외한다)
 2. 최초 매매거래일의 제18조제1항제1호의 단일가호가시간에 접수된 호가 중 제14조제2항제2호의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산출한 상한가를 초과하거나 하한가에 미달하는 호가
 3. 그 밖에 거래소가 호가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호가
- ② 단일가호가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중단된 경우에는 해당 조치 전에 접수된 호가는 재개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10호의 조건이 부여된 호가의 경우에는 해당 호가의 수량 중 다음 각 호의 수량은 취소한 것으로 본다.
1. 일부충족조건 호가의 경우에는 체결되지 아니한 수량
 2. 전량충족조건 호가의 경우에는 호가한 수량의 전부를 체결할 수 없는 때의 그 호가한 수량의 전부

- 제13조(호가의 취소 및 정정)** ① 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라 호가를 정정하는 경우 그 효력은 정정호가를 접수한 때로 한다.
- ② 회원은 단일가호가시간 종료 전 1분간에는 호가를 취소하거나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절 호가의 관리

- 제14조(기준가격)** ① 규정 제41조제1항에 따른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협의매매에 의한 거래가격은 기준가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 5. 13., 2017. 4. 28., 2019. 5. 22., 2022. 7. 25.>
1. 직전 매매거래일의 증가
 2. 직전 매매거래일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 다만, 각 배출권 상품별로 이행연도가 가장 빠른 종목(이하 "지표배출권"이라 한다)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월부터 변경일 이전까지 지표배출권으로 변경될 종목의 매매거래가 없는 때에는 동일 상품의 종전 지표배출권의 마지막거래일의 증가를 변경일의 지표배출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매매거래일의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6. 5. 13.>
1. 제18조제1항제1호의 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 거래소가 지표 배출권의 기준가격,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정하는 가격
 2. 매매거래시간의 경우 장개시시점에 형성된 가격. 다만, 해당 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호의 가격에 비하여 낮은 매도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을, 높은 매수호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을, 그 밖의 경우에는 제1호의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표 배출권이 아닌 종목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월 첫 번째 거래일 기준가격은 지표배출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신설 2017. 1. 18., 2022. 7. 25.>
1. 직전월에 매매거래가 없었을 것
 2. 직전월 마지막 매매거래일의 증가(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으로 한다)가 지표 배출권의 하한가보다 낮거나 상한가보다 높을 것
- ④ 거래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준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7. 25.>

- 제15조(가격제한폭, 상한가 및 하한가)** ① 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라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10(최초 매매거래일의 제18조제1항제1호의 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으로 한다)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해당 금액 중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다만, 규정 제47조에 따른 협의매매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해당 금액 중 기준가격의 호가가격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 5. 22.>
- ② 규정 제41조제2항에 따라 상한가는 기준가격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해당 가격이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보다 낮고 호가가격단위와 일치하는 가격 중 그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으로 한다)으로 하고, 하한가는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으로 한다.
- ③ 거래소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의 상황에 이상이 있거나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격제한폭, 상한가 또는 하한가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6조(호가수량한도)** 규정 제42조에 따른 최대 호가수량은 100,000 배출권으로 한다. 다만,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수량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13.>

- 제17조(매도가능수량 및 매수가능금액)** ① 규정 제43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도가능수량"이란 종목별로 제1호의 수량에 제2호의 수량을 더한 수량에서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수량을 뺀 수량을 말한다. <개정 2016. 5. 13.>
1. 전일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는 수량

2. 당일 매수거래가 이루어진 수량
 3. 당일 매도호가를 제출한 수량
 4. 차입한 수량
 5.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매도제한수량
 - 가. 시장 밖에서 매도한 수량으로 종합정보센터에 신고한 수량
 - 나. 이월 또는 차입을 신청한 수량
 - 다. 그 밖에 할당취소 등의 사유로 배출권의 수량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량
 - 라. 외부사업 감축량 중 상쇄배출권으로 전환을 신청한 수량
- ② 규정 제43조제2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수가능금액"이란 거래증거금계좌에 납부한 금액에 당일 매도거래가 이루어진 금액을 더한 금액에서 거래증거금을 뺀 금액을 말한다.
- ③ 제2항의 거래증거금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당일 매수호가를 제출한 금액. 이 경우 매수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호가가격과 체결가격과의 차이에 해당 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취소한 경우에는 취소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2. 수수료 등 매매거래에 소요되는 비용

제17조의2(이자의 처리) 규정 제43조제2항의 거래증거금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거래소가 규정 제71조의 일 반상품시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배출권 거래시장의 발전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5. 18., 2020. 11. 30.>

[본조신설 2016. 5. 13.]

제3절 매매계약의 체결

- 제18조(단일가호가의 범위)** ① 규정 제45조제2항에 따라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에 참여하는 호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간동안 접수된 호가로 하며, 그 이전에 접수된 호가 중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호 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규정 제45조제1항제1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호가접수시간 개시시점부터 장개시 전까 지로 한다.
 2. 규정 제4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부터 10분간 으로 한다. 다만, 호가상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소가 정 하는 시간으로 할 수 있다.
 3. 규정 제45조제1항제4호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장종료 30분 전부터 장종료 전까지로 한다. 다만, 제2호 에 따른 시장 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점이 장종료 4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 재개시점부터 장종료 전까 지로 한다.
- ② 규정 제45조제4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가격을 말한다.
1. 최초 매매거래일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제14조제2항제1호의 가격과 같은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해당 가격과 같은 가격이 없는 때에는 해당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2.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준가격을 달리 정하는 종목의 최초의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가격과 같은 가격이 있는 때에는 그 가격, 해당 가격과 같은 가격이 없는 때에는 해당 가격에 가장 가까운 가격
-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일가호가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9조(협의매매의 호가접수시간) 규정 제47조제3항에 따라 협의매매의 호가접수시간은 장개시시점부터 장종료 30 분 전까지의 시간으로 한다. 다만, 단일가호가시간은 제외한다.

제20조(협의매매의 호가수량) 규정 제47조제3항에 따라 협의매매의 호가수량은 1,000 배출권 이상 3,000,000 배출권 이하의 수량으로 한다. 다만,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가수량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30., 2019. 5. 22.>

제21조(협의매매의 호가입력내용) 회원이 협의매매를 하기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입력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 각 호의 내용. 다만, 같은 항 제10호의 내용은 제외한다.
2. 상대방 회원의 계좌번호
3. 협의가 완료된 시각
4.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협의매매의 제한 등) ① 회원은 협의매매를 위한 협의가 완료된 때부터 60분 이내에 그에 해당하는 호가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협의매매를 위하여 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매도회원과 매수회원은 각각 1인이어야 한다.
- ③ 회원은 협의매매를 위한 호가를 제출한 후에는 해당 호가를 정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2(유상할당 경매의 방법) 규정 제48조에 따른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3조부터 제10조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20. 5. 27.>

[본조신설 2018. 5. 18.]

제22조의3(정부예비분 추가할당의 방법) 규정 제48조에 따른 추가할당을 경매 또는 협의매매의 방법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배출권 유상할당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한 배출권 추가할당에 관한 규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수행한다. <개정 2020. 5. 27.>

[본조신설 2018. 5. 18.]

제23조(매매거래의 임의적 중단 기준) 규정 제49조제1항제1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4조(매매거래내용의 통지사항) 규정 제50조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회원번호
2. 종목코드
3. 수량 및 가격
4. 매도 또는 매수의 구분
5.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5조(착오매매의 정정방법) 거래소는 규정 제51조제1항에 따른 착오매매가 발생한 경우 정정이 가능한 것은 원래의 호가내용에 맞도록 정정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회원이 인수하게 한다.

제26조(착오매매에 따른 손익의 정산 등) ① 회원은 제25조에 따라 착오매매를 인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반대매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5. 18.>

- ② 거래소는 제1항의 반대매매에 따라 발생하는 손익을 해당 회원과 정산한다. 이 경우 수수료 등 매매거래에 수반되는 비용은 손실로 계산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손익은 반대매매를 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매매거래일에 정산한다. 다만, 거래소는 정산손익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때마다 정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절 삭제<2019. 5. 22.>

제27조 삭제 <2019. 5. 22.>

제28조 삭제 <2019. 5. 22.>

제29조 삭제 <2019. 5. 22.>

제30조 삭제 <2019. 5. 22.>

제31조 삭제 <2019. 5. 22.>

제32조 삭제 <2019. 5. 22.>

제5장 매매거래의 청산 및 결제

제33조(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 등의 산출방법) ① 규정 제55조제3항에 따라 회원이 거래소에 납부하거나 거래소로부터 수령하는 결제배출권(규정 제55조제2항에 따른 결제배출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결제대금(규정 제55조제2항에 따른 결제대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출하여 확정한다. <개정 2015. 12. 18, 2016. 5. 13.>

1. 결제배출권의 경우 해당 회원의 종목별 납부할 수량의 합계수량과 수령할 수량의 합계수량을 차감하여 확정
 2. 결제대금의 경우 해당 회원의 납부할 대금의 합계금액과 수령할 대금의 합계금액을 차감하여 확정
- ② 제1항에 따라 결제배출권 또는 결제대금을 확정하는 경우 2개 이상의 회원번호가 부여된 회원에 대하여는 회원번호별로 결제배출권 및 결제대금을 각각 확정한다.
- ③ 회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서의 매매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소와 수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12. 18.>
- ④ 삭제 <2015. 12. 18.>

제34조(결제내역의 통지) ① 규정 제56조제3항에 따라 회원에게 통지하는 결제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2. 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배출권의 종목별 수량
 3. 해당 회원의 차감·확정된 결제대금
 4. 그 밖에 배출권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 ② 규정 제56조제3항에 따라 종합정보센터에 통지하는 결제배출권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매체결일 및 결제일
 2. 회원별로 차감·확정된 결제배출권의 종목별 수량
 3. 그 밖에 배출권시장의 결제에 필요한 사항
- ③ 거래소는 결제내역을 확정할 때에 그 내역을 지체 없이 회원 및 종합정보센터에 통지한다.
- ④ 규정 제56조제3항에 따라 회원은 결제내역을 통지 받은 때에 그 내역을 확인한 것으로 본다.

제35조(결제은행의 지정 및 해지) ① 규정 제57조제5항에 따른 결제은행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은행 중에서 거래소가 지정한다.

1. 금융위원회의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주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보통주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기본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기본자본의 비율을 말한다) 및 총자본비율(위험가중자산 대비 전체 자기자본의 비율을 말한다)이 각각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2-9의 최소 준수비율의 1.2배 이상일 것
 2. 금융감독원이 지정한 적격 외부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한 신용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이 'AA' 이상일 것
- ② 거래소는 결제은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은행업감독규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또는 경영개선명령 조치가 있는 경우
 3. 「은행업감독규정」 제3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긴급조치가 있는 경우

제35조의2(계산서의 발급 등) ① 거래소는 배출권 또는 외부사업 감축량을 매수한 회원에 대하여 매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의 3매매거래일 전까지 매수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산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5. 12. 18., 2016. 5. 13.>

- ② 배출권 또는 외부사업 감축량을 매도한 회원은 매도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의 3매매거래일 전까지 매도대금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계산서를 거래소에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2016. 5. 13.>
- ③ 계산서의 기재사항인 사업자등록번호는 회원이 거래소에 통보한 회원의 본점 또는 대표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한다. <개정 2015. 12. 18.>
-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한 자가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지연하여 발급하는 등의 사유로 상대방에게 손실을 끼친 때에는 해당 손실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8.>
- ⑤ 거래소는 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한 회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회원이 납부한 수수료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거래가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의 3매매거래일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6. 5. 13.>

제36조(회원의 결제가능여부 통지 등) 규정 제60조제4항에 따라 거래소는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의 통지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8.>

1. 결제가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결제대금·결제배출권의 현황 및 사유
2. 그 밖에 거래소가 안정적이고 원활한 결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7조(배출권결제의 특례) ① 규정 제61조제2항에 따라 결제시한에 결제되어야 하는 배출권 또는 외부사업 감축량의 종목(이하 "원배출권 등"이라 한다)에 대신하여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그 금액은 제1호의 금액에 제2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과 제3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5. 13.>

1. 원배출권 등의 매매거래일의 증가에 결제되지 아니한 수량을 곱한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
 3. 현금을 지급하는 날의 원배출권 등의 증가(당일 증가가 확정되기 전에 이전하는 경우 직전 매매거래일의 증가.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결제되지 아니한 수량을 곱한 금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배출권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과 원배출권 등을 수령할 회원간에 별도의 합의를 하여 거래소에 사전에 통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 5. 13.>
- ③ 거래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원배출권 등을 대신하여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종합정보센터에 통지한다. <개정 2016. 5. 13.>

제38조(소속직원의 결제지원) 규정 제62조제5항에 따라 회원의 결제업무를 지원하는 소속직원은 성실·공정한 자세로 결제불이행 처리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제6장 시장의 관리

- 제39조(호가정보의 공표 등)** ① 규정 제64조제1항제4호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정보에 관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단일가호가시간의 경우에는 예상체결가격·예상체결수량,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평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평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2. 단일가호가시간 외의 호가접수시간의 경우에는 매도·매수별 최우선평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5개의 우선평가의 가격, 그 가격의 호가수량 및 해당 호가 수량의 합계수량
- 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하는 예상체결가격 등의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예상체결가격 및 예상체결수량 : 해당 시점까지 접수된 호가로서 규정 제4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매매거래가 성립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 및 수량
 2. 예상최우선평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평가의 가격 및 호가수량 : 매도·매수별 최우선평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연속 3개의 예상우선평가의 가격 및 그 가격의 호가수량. 이 경우 제1호에 따라 예상체결가격의 형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체결이 성립되었을 경우의 최우선평가를 기준으로 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세공표의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0조(시세 등의 공표방법)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시세 등의 공표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 호가입력프로그램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단말기 등에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40조의2(보유한도 제한) ① 규정 제65조의2제1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개정 2022. 6. 23., 2022. 11. 25., 2023. 1. 26., 2023. 6. 27.>

1. 시장조성자: 600만톤
2. 거래중개회원: 100만톤

② 규정 제65조의2제3항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개월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 10. 26.]

제41조(회원에게 대한 통보사항) ① 규정 제66조에 따라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회원에게 통보한다.

1. 규정 및 이 세칙(이하 이 조에서 "규정등"이라 한다)의 제정 및 개폐
2. 규정등에 따른 변경 및 조치에 관한 사항
3. 임시휴장, 시장의 임시정지, 시장의 매매거래중단 및 매매거래시간의 변경
4.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자전달매체에 표시
2. 문서에 의한 통보

제42조 삭제 <2020. 11. 30.>

부칙 <제1126호, 2014. 12. 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4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할당배출권의 매매거래 개시일) 규정 제1120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2014년 12월 2일 제정) 부칙 제2조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5년 1월 12일을 말한다.

부칙 <제1131호, 2014. 12. 31.>

이 세칙은 201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3호, 201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5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3조제3항·제4항 및 제3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의 시행일) 규정 제1196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2015년 6월 8일 개정) 부칙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6년 1월 4일을 말한다.

제3조(가입비 면제에 대한 특례) 제5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회원의 분할 또는 분할 합병에 따라 신설되어 할당대상업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이 2016년 1월 21일까지 회원가입을 신청한 경우에는 가입비를 면제한다.

부칙 <제1323호, 2016. 5. 13.>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6년 5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의 시행일) 규정 제1272호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2015년 12월 11일 개정) 부칙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2016년 5월 23일을 말한다.

부칙 <제1326호, 2016. 5. 30.>

이 세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17호, 2017. 1. 18.>

이 세칙은 2017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호, 2017. 4. 28.>

이 세칙은 2017년 5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6호, 2018. 5. 18.>

이 세칙은 2018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에 따른 이자의 처리는 2019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87호, 2019. 5. 22.>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준가격에 대한 특례) 이 세칙 시행일 이후 최초로 상장된 해외 상쇄배출권의 기준가격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한다.

부칙 <제1834호, 2020. 5. 27.>

이 세칙은 2020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92호, 2020. 11. 30.>

이 세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69호, 2021. 6. 2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21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의 시행일) 규정 제1937호「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2021년 4월 16일 개정) 부칙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개정 2021. 10. 26.>

1. 규정 제2조, 제4조, 제5조, 제11조의2(거래중개회원은 할당배출권의 자기매매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및 제12조의 개정규정: 2021년 6월 22일
2. 규정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7조, 제20조, 제24조, 제28조, 제29조, 제47조, 제62조 및 제62조의2의 개정규정: 2021년 10월 29일

부칙 <제1987호, 2021. 10. 26.>

이 세칙은 2021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45호, 2022. 6. 23.>

이 세칙은 2022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7호, 2022. 7. 25.>

이 세칙은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0호, 2022. 11. 25.>

이 세칙은 202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04호, 2023. 1. 26.>

이 세칙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10호, 2023. 3. 14.>

이 세칙은 2023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32호, 2023. 6. 27.>

이 세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및 서식

[별표] 내부통제체계의 요건충족 판단 기준 등<신설 2021.10.26>

[별지 제1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회원가입 신청서<개정 2021.10.26>

[별지 제2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회원탈퇴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배출권 거래시장 회원지위 승계 신청서